

시간제교육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6조의2에 의거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① 시간제등록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제2장 모집 및 전형방법

제3조(모집인원) 시간제등록생은 매 학기별로 선발하되 모집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2.12.21>

제4조(모집방법 및 시기) 시간제등록생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며, 모집 시기는 매학기 종료와 함께 전형일정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전형방법) ① 전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

1. 졸업증명서(고등학교이상) 1부.
2.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원본과 사본 각 1부.
3. 입학원서(사진 및 날인 필수) 1부.

② 이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으로 등록하여 수강한 자가 그 다음 학기에 계속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및 학점이수

제6조(학점이수범위)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학기별 학점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기 : 12학점
2. 2학기 : 12학점

제7조(재학기간 및 학년) ①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단위로 재학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매학기에 실시하는 시간제등록생 모집 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되는 경우 계속하여 재학 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생은 학년을 배정하지 아니하며, 등록학년도 및 학기로 교과목 이수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8조(수강신청) 학기별 수강신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당해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여 수강신청 한다.

제9조 (등록) ① 합격자는 총장이 따로 정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② 수업료는 정규학생에게 적용하는 학점 당 등록금에 시간제등록생이 수강신청 한 학점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업료로 한다. 다만 수업료에 대한 사항은 매학년도 개강 전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간제등록생은 입학금 및 학생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시간제등록생이 등록완료 후 합격포기, 자퇴, 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한 해당 등록금을 반환한다.

제4장 수업 및 학위인정

제10조(교과과정 및 수업) ① 교과과정 및 수업은 정규학생과 같이 통합하여 운영한다. 다만 교과과정을 따로 편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원격강의는 정규학과와 계절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과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운영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의 수업은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하고 수업운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제11조(성적평가 및 관리) ① 시험 및 성적은 정규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D급 이상의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② 당해학기 학업성적표에는 과락(F)과목 및 평균평점을 등재하지 아니하며, 학점 인정을 받은 교과목만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이 수업일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하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성적 인정신청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2조(학적관리) ① 시간제등록생의 학적사항은 정규학생과는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며, 개인별로 학번을 부여한다.

② 학적부와 성적표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며, 시간제등록생이 2개학기 이상 등록하는 때에는 당초 등록된 학번과 학적부 및 성적표를 계속 사용하여 이중학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학위취득 및 전공) 시간제등록생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에 설치된 학부 또는 전공(과)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14조(학위수여요건) 시간제등록생이 본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간제등록생이 본 대학 학칙에 의하여 130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정규 학생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2. 시간제등록생이 본 대학 동일 전공(학과)에서 85학점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득학점과 합산하여 제1항에 충족할 시 본 대학의 장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여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3. 시간제등록생이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점은행의 취득학점으로 인정된다.

제15조(학위신청 및 수여) ① 본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시간제등록생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습자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고, 학점인정을 받은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신청서에 학점인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신청 기간 내에 교학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 신청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2. 후기 신청기간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② 총장은 학위신청자가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학위수여예정일 14일 이전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위수여에 대한 결과통보에 따라 학위증을 수여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위원회의 설치) 시간제 교육지원실에 시간제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시간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간제 교육지원 실장이 된다.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간제 교육의 주요 교학업무
2. 교육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시간제교육의 각종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운영에 필요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조사항
5. 교육원영 추진 실적에 관한 평가
6. 학생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9조(회의) ①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위원회에서 선임된 참석위원 2인이 서명 날인한다.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지원팀장이 된다.

제22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제 증명발급

제24조(제 증명발급) ① 시간제등록생이 재학 또는 재적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명을 발급한다.

1. 수강증명서
2.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이수증명서
3. 기타 학적에 관한 증명

② 본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인정내역 및 성적 자료를 이관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을 발급한다.

1. 학위증명서
2. 성적증명서

제7장 보칙

제25조(학칙준수 및 적용) 시간제등록생은 재학기간 중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법령의 준용) 시간제등록생 관리 및 학점은행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4-11-3-3 시간제교육 운영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